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6월 29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임시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94. 7. 13)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文忠實)

- 가. 제안이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 협의 조정사항 및 심의사항 정함
- 2) 안 제4조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시민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정함.
- 3) 안 제9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조대현)

- 1. 조례안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표현보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됨.
- 2. 조례(안) 제4조(위원회 구성)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인 내외"로 수정하여 10인이 약간 넘어도 무방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위촉범위를 신축성있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내무부준칙(안)은 "20은 내외"로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는 "15인 내외"로 규정되어 있음.

- 3. 조례(안) 제6조(위원의 임기) 제1항의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는 당연한 사항이므로 구태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4.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회의)를 내무부준칙(안)과 서울시 조례와 우리구 조례(안)을 비교할 때 제1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우리구 조례안은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빼고 그 후속 내용만 규정하였으나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내무부준칙(안)과 서울시 조례 제8조와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42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	------------------------------------

1. 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 협의·조정 사항 및 심의사항 정함
- 나. 안 제4조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시민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을 정함.
- 다. 안 제9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함.

3.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영등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소장, 보건소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산업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청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7.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7월 4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7월 8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제1차 시민보사위원회('94. 7. 13)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동법 동규칙 제7조 제3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때문에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의료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의료기관개설허가등 수수료 규정과 동일하게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 50,000원"으로 하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개설허가 수수료 30,000원"으로 하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수수료 20,000원"으로 하고,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수수료 10,000원"으로 하며, "안경업소개설등록 수수료 10,000원"은 개정전('92. 7.16)의료기

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과 같이 정하며, "치과기공소인정수수료 2,000원"은 개정전 의료기사법 제13조 2항 규정과 동일하게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조대현)

1.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등 수수료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88. 5. 1 조례 제26호로 제정되고 '90. 3. 28 조례 제117호로 개정된 조례 제3조(종류 및 요액)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에 "다"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중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 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때 보건소도 인허가 및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우려있어 "다"항의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표현한 것을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나머지 여타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修正案의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7. 13 윤태봉의원의 1인 발의

나. 수정이유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에 "다"항 신설내용중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으로 표현한 것은 일반인들이 볼때 보건소도 인허가 및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뜻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등 개설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수정

다. 수정 주요골자

○별표 2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호 "다"항 "보건소 인허가 및 신고등사항"을